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 7. 20.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7. 13·7. 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 가. 백두대간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도민들이 보고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제254회 도의회 의결을 얻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취득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 등 2필지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0㎡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9 임야
1필지 6,489㎡
 - 건물신축 : 지상 2층 850㎡(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06. 1 ~ 2008. 12(2년간)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2,600백만원(국비 1,300)
 - ※ 토지매입 10백만원, 건축설계 90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우수한 인문자원을 자연생태와 연결시킨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번지 도유림에 건물 신축 850㎡,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도록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지내 백두대간 천혜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신축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변경된 건물신축부지에 국유림인 연풍면 원풍리 산1-9번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짐.

- 본 변경계획안은 국유지에 공유대부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 하려는 것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 건축설계 변경으로 사업비를 25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26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해당토지의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 건축 설계비 9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6,489.0	10,000				
	건물	1 건	850.0	2,590,000				
	기타							
1	토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9	6,489.0	10,000	2007.7-1 2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신축부지	국 가 (재경부)	
	건물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 등 2필지	850.0	2,590,000	2007~ 2008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조성	신 축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련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35조 제 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0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